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789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1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2.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12. 26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및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전담할 위원회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운용설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기능(안 제4조)
-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10조)
- 다. 위원회운영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안 제11조)
- 라. 여성발전기금조성의 재원(안 제16조)
- 마.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안 제18조 내지 제2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와 제83회 고성군의회(정례회)시 2차례 걸쳐 상정 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보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금출연방안 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 부결 처리한 안건으로

-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현재 상기관련 조례를 도내 군부에서 살펴보면 함안·남해·하동군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토록 하는 법률적 위임 근거가 확실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외에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의 위원회 구성인원(15명)의 적정여부와 안 제15조에서 기금 3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출연재원과 출연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노인복지기금 등 4종)이 2002년말 기준 642백만원으로서 추가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미칠영향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발전기금 충당 방법은?

● 답 : 2004년부터 군에서 매년 50,000천원씩 적립하고 이자도 포함하여 기금을 확보하고 여성협의회에서 출연하는 기금과 같이 확보할 계획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12.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